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제1조

목적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중개인의 지원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발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개 메커니즘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과 이에 속하는 부속서상의 것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¹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제1절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

¹ 이 부속서의 목적상,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그리고 무역구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원활화,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 및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의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하여 관련된 무역 규칙을 포함한다. 이는 농산물 무역, 서비스 및 설립, 문화 협력, 정부조달, 경쟁, 지식재산권, 지급 및 자본이동,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외한다.

제3조

증개절차의 개시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증개절차에 임하도록 언제라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 그 요청은 요청 당사국의 우려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하고, 다음이어야 한다.

가.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적시할 것

나. 그 조치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미치는 것으로 요청 당사국이 믿는 주장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진술을 제공할 것, 그리고

다. 그러한 무역 효과가 어떻게 그 조치와 연결된다고 요청 당사국이 판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

2. 그러한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그 요청의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

제4조

증개인의 선정

1. 증개절차를 개시한 경우, 양 당사국은 요청에 대한 응답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중개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장려된다. 양 당사국이 정해진 기한 내에 중개인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추첨으로 중개인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요청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고,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며,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 3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그 명부의 제출로부터 5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명부에서 최소한 하나의 이름

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무역위원회의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은 선정된 이름 중 추첨으로 중개인을 선정한다. 추첨에 의한 선정은 양 당사국 대표의 임석 하에 추첨에 의한 임명 요청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2.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와 관련이 있는 대상 분야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² 중개인은, 양 당사국이 그 조치와 그 가능한 무역 효과를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이르도록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5조

중개절차 규칙

1. 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중개절차를 개시한 당사국은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 특히 문제가 되는 조치의 운영 및 그 무역 효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중개인과 다른 한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제출을 전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은 문제의 기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은 관련된다고 간주하는 모든 정보를 자국의 기술 또는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

2. 중개인은 초기단계를 수행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특히 양 당사국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인지,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들과 협의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초기 단계에 이어, 중개인은 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양 당사국이 고려할 만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그러한 의견에서, 중개인은 문제되는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

² 예를 들어, 표준 및 기술 요건에 관한 경우, 중개인은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조치의 정책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의문시하여 서도 아니 된다. 중개인은 상호 합의된 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과 개별적 으로 또는 공동으로 회합할 수 있다. 이 절차 단계는 중개인의 임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완료된다.

4. 중개절차는 비밀이며,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밖의 장소에서나 방법으로 수행된다.

5. 중개절차는 다음으로 종결된다.

- 가. 양 당사국의 해결 합의에 대한 서명으로, 그 서명일에
- 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합의일에
- 다.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추가적인 중개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 한다는 중개인의 서면 선언으로, 또는
- 라. 중개절차에 따라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한 후, 그리고 중개인의 자문 의견 및 제안을 고려한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선언으로

제2절

이행

제6조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이행

1. 양 당사국이 해결책에 합의한 경우 각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이행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단계나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제3절

일반 규정

제7조

분쟁해결과의 관계

1. 중개 메커니즘상의 절차는 이 협정 또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분쟁해결절차에서 증거로서 다음에 의존하거나 이를 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중개절차 과정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취한 입장

나. 중개의 대상이 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쪽 당사국이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사실, 또는

다. 중개인이 제시한 제안

2. 중개 메커니즘은 제14장(분쟁해결)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 한다.

제8조

기한

이 부속서에 언급된 어떠한 기한도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9조

비용

1. 각 당사국은 중개절차에의 참여로부터 발생된 자국의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은 중개인의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적인 사안으로 발생된 비용을 분담한다.

제10조

검토

1. 양 당사국은, 제14.2조에 정의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안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그러한 사안을 다루는 상응하는 메커니즘³의 설치에 합의할 경우, 그 중개 메커니즘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적용 범위의 확대는 그러한 합의의 적용일부터이다. 이는 상응하는 세계무역기구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적 확대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5년 후, 양 당사국은 획득된 경험, 그리고 상응하는 세계무역기구의 메커니즘의 발전에 비추어, 중개 메커니즘을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

³ “상응하는 메커니즘” 이란 아프리카 그룹, 캐나다, 유럽연합, 최빈개발도국 그룹,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관한 11개 개발도상국 그룹,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및 스위스가 2007년 7월 23일자 문서 TN/MA/W/88 “비관세장벽-비관세장벽에 대한 해결의 촉진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제안”에서 제안한 메커니즘, 또는 2007년 7월 23일자 문서 TN/MA/W/88을 대체하는 문서에서 제안된 그 밖의 유사한 메커니즘을 말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